

# 임금피크제 지원금 업무처리 지침

2015. 12.



# 차 례

<b>I. 제도 개요</b> .....	<b>1</b>
<b>II. 정년 60세 사업장 임금피크제 지원금</b> .....	<b>2</b>
1. 지원 요건 .....	2
2. 지원 제외 사유 .....	9
3. 지원 금액 및 기한 .....	13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22
5. 적용례 및 기타 사항 .....	24
<b>III. 정년연장형·재고용형·근로시간단축형</b> .....	<b>32</b>
1. 지원 요건 .....	32
2. 지원 제외 사유 .....	38
3. 지원 금액 및 기한 .....	42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57
5. 기타 사항 .....	59
<b>IV.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b> .....	<b>65</b>
1. 지원 요건 .....	65
2. 지원 제외 사유 .....	67
3. 지원 금액 및 기한 .....	74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76
<별첨 1>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관련 규정 .....	78
<별첨 2>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관련 규정 제·개정 .....	96
<별첨 3>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고시 .....	106
<별첨 4>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주요 변경사항 .....	130





## I 제도 개요



### 1 목적

-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
  - \* 2006년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규정하고 시행

### 2 법적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제2항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 \* 임금피크제 지원금(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유효기간
    - ▲ 300인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15.12.31까지 적용대상 근로자
    - ▲ 300인 미만, 국가지방자치단체 : '16.12.31까지 적용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신설('15.12.4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신설('15.12.4 시행)



II

## 정년 60세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1

### 지원 요건

#### 1] 사업장 요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016.1.1.부터 시행

▲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7.1.1.부터 시행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제1항)

- 법 적용 대상임에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60세로 간주(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제2항)

- 300인 미만 사업장도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일('17.1.1.) 이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 관련 TIP >**

- ❖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 시기까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되고 법 시행 이후 기존의 60세 미만 정년 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함

□ 임금피크제 시행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 대표 개념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
  - \*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예시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의 경우도 근로자 대표권 행사 가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시행 및 내용을 확인

- 임금피크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시행여부가 규정되어야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시행여부 및 세부 사항(감액률, 피크 연령, 시행시기, 적용대상 등) 확인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임금피크제 시행여부 및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통해 확인
  - \* 임금피크제 시행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음



□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 임금을 감액하는 시점은 55세 이후이어야 하며, 55세 이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55세 이후이므로 반드시 55세부터 임금 감액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6세, 57세, 58세, 59세 등에 임금 감액을 시작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임금 감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액도 가능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호의 사유로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영 제28조 제2항 및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제28조의2 제2항 또는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고시(2015.12.4. 시행) >**

제4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피크제의 세부사항이 명시된 서면 등을 통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2 근로자 요건

### □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함
    - \*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18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계약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기업의 합병,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

#### < 관련 질의회시 >

- 하나의 회사가 경영방침에 따른 사업부문별 경영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일부 지방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신설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요건인 18개월 동안의 계속근무 여부 판단 시 종전 법인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하고 이 경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
  -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봄
  - 종전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별도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신설법인에 계속 적용되어, 신설법인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계속근로기간도 종전 근로일수에 통산·산정하여 근로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다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별도의 법인으로 사업장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회사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법인에 신규로 입사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면 종전 회사와 신설 법인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장애인고령자고용과-404, 2010.8.5.)



-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감액된 이후 계속 근무기간이 18개월에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 정년제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재고용된(촉탁직 등)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참고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15.12.31.(300인 미만 사업장은 '16.12.31.)이므로 '16.1.1 이후 (300인 미만 사업장은 '17.1.1) 적용대상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피크임금에 비해 해당연도 임금이 10% 이상 감액

- 피크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감액되어야 함
  - 피크 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 \* 피크 임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에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계산
  - 해당연도 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연도에 지급받은 임금

< 연도별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5호 )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임금인상률(%)	4.8	4.8	4.9	1.7	4.8	5.1	4.7	3.5	4.2	4.4

- 피크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기준
  - 피크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 급여
  - 해당연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 급여에서 해당연도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15.12.7.>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2008.9.19.>
5. 정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목개정 2015.12.7.].

**< 소득세법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금감액률은 피크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을 피크임금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이며, 임금감액률이 10% 이상일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

\* 임금감액률(%) :  $[(\text{피크임금} - \text{해당연도 임금}) / \text{피크임금}] \times 100$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임금감액률과 실제 임금감액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피크임금에 비해 해당연도 임금이 10% 이상 감액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

< 적용 사례 >

○ '15년 연간 7,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A가 '16.1.1.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16.1.1~12.31까지 총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단, 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만족)

☞ 임금감액률 :  $[(7,000\text{만원} - 6,000\text{만원}) / 7,000\text{만원}] \times 100 = 14\%$

☞ 지원금 : 피크임금의 90%인 6,300만원에서 감액 임금인 6,000만원을 뺀 300만원 지원

○ 해당연도 중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거나, 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피크 임금 계산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

\* 피크임금 :  $\text{연간 임금(근로소득원청진수영수증 상 총급여)} \times (\text{해당 일수} / 365\text{일})$

< 적용 사례 >

○ '15년 연간 7,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A가 '16.7.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16.7.1~12.31까지(184일) 총 2,1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단, 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만족)

☞ 피크임금 :  $7,000\text{만원} \times (184 / 365) = 3,500\text{만원}$

☞ 임금감액률 :  $[(3,500\text{만원} - 2,100\text{만원}) / 3,500\text{만원}] \times 100 = 40\%$

☞ 연간 지원금 한도액 :  $1,080\text{만원} \times (184 / 365) = 544\text{만원}$

☞ 지원금 : 피크임금의 90%인 3,150만원에서 감액 임금인 2,100만원을 뺀 금액이 1,050만원 → 연간 지원금 한도액 544만원 지원

2

지원 제외 사유

□ 연간 임금이 7,250만원 초과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도 1년이 종료된 이후 연간 총 합계액(임금피크제 지원금 제외)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수 조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을 최종 확인

- 연도 중 임금피크제에 적용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 중에 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기간 만큼 환산한 금액을 적용

\* 2016.7.1.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경우 : 36,547,945원 [7,250만원 × 184일 (7.1~12.31까지 총 일수)/365일]

\* 2016.6.30.까지 근무하고 중간퇴직한 경우 : 35,952,054원 [7,250만원 × 181일 (1.1~6.30까지 총 일수)/365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15.12.4. 시행) >**

제1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 분기별 또는 월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최종 확인한 연간 임금이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7,250만원)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함

지급제외 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 개정 고시 시행일('15.12.4) 이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정 고시 적용(고시 제1조 및 제3조, 부칙 제1조) ⇒ 연간 임금이 7,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제외

\* (예시) '16.1.1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근로자의 소득제한 금액은 7,250만원

- 개정 고시 시행일('15.12.4) 이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시행일 이후 해당 제도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는 개정 고시 적용(고시 제1조 및 제3조, 부칙 제3조) ⇒ 연간 임금이 7,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제외

\* (예시) '15.1.1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16.1.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근로자의 소득제한 금액은 7,250만원

② '15.12.4 고시 이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 개정 고시 시행일('15.12.4) 이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행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정 고시 적용(고시 제1조 및 제2조, 부칙 제1조) ⇒ 연간 임금이 7,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제외
  - \* (예시) '16.1.1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 (300인 미만)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근로자의 소득제한 금액은 7,250만원
  -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유효기간이 '15.12.31까지이므로 '16.1.1 이후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 제28조는 적용받을 수 없음(제28조의2 적용 대상)

③ '10.12.31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 '10.12.31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7호(2010.8.3.) 규정 적용이 원칙(고시 부칙 제2조 제1항) ⇒ 연간 임금이 5,7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제외
  - \* (예시) '10.1.1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종전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소득제한 금액은 5,760만원
-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시행일('15.12.4) 이후에 제28조와 제28조의2 요건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개정 고시 적용(고시 부칙 제3조) ⇒ 연간 임금이 7,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제외
    - \* (예시) '10.1.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5.1.1부터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가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될 경우 '15.12.4 이후 임금 감액분에 대해서는 제28조의2 요건에 따른 지원금을 선택하면 소득제한 금액은 7,250만원
  - 제28조에 따른 지원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고시 제2010-47호(2010.8.3.) 적용(고시 부칙 제2조 제1항) ⇒ 연간 임금이 5,7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제외
    - \* (예시) '10.1.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5.1.1부터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가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될 경우 제28조 요건에 따른 지원금을 선택하면 소득제한 금액은 5,760만원



④ '11.1.1부터 '15.12.3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고시 부칙 제2조제2항) ⇒ 연간 임금이 해당 연도 고시에서 규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급 제외

\* '11년(6,800만원), '12년(5,760만원), '13년(5,760만원), '14년(6,870만원), '15년(6,870만원)

○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시행일('15.12.4) 이후에 제28조와 제28조의2 요건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개정 고시 적용(고시 부칙 제3조) ⇒ 연간 임금이 7,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제외

\* (예시) '14.1.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5.1.1부터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가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될 경우 '15.12.4 이후 임금 김액분에 대해서는 제28조의2 요건에 따른 지원금을 선택하면 소득제한 금액은 7,250만원

- 제28조에 따른 지원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시 적용(고시 부칙 제2조제2항) ⇒ 연간 임금이 해당 연도 고시에서 규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급 제외

\* (예시) '14.1.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5.1.1부터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가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될 경우 제28조 요건에 따른 지원금을 선택하면 소득제한 금액은 6,870만원

### 3 지원 금액 및 기한

#### 1 지원 금액

#####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낮아진 금액

○ 피크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진 금액 지급

##### ①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

- 피크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과 해당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외)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진 금액 지원
  - \*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의 경우는 피크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과 해당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을 비교
  - \* 임금피크제 적용 2년차 이상의 경우는 피크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과 해당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에서 지원금 제외)을 비교
- 다만, 연도 중 임금피크제 적용, 중간 퇴직 등으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 등을 통해 확인

#### < 연도 단위 지원금 산정방법 >

##### ❖ 지원금 계산식

[①(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②(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③(100분의 90)] - [④(해당 연도 근로 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① 피크임금 :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에서 정의한 '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 ② 연도별 임금인상률 :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다음 연도 이후에는 당초 피크 임금이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산
- ③ 100분의 90 :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 감액률
- ④ [(해당 연도 근로 소득)-(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연도별 임금인상률 반영 관련 적용사례 >**

- ❖ 임금피크제에 처음 적용된 다음 연도부터는(임금피크제 적용 2년차 이상) 당초 피크임금에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계산('16년에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전제)
- ① '16년도 지원금 산정 : '15년도 임금이 피크임금이므로 임금인상률 반영없이 (피크임금×10/100)과 '16년도 해당임금의 차액 계산
- ② '17년도 지원금 산정 : '15년 피크임금에 '16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피크임금×10/100)과 '17년도 해당임금의 차액 계산
- ③ '18년도 지원금 산정 : '15년 피크임금에 '16년도, '17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피크임금×10/100)과 '18년도 해당임금의 차액 계산

② 분기 단위 지원금 지급

- 분기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크 임금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를 분기별 피크 임금으로 환산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산정시 피크임금 환산 방법 >**

- '16.7.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16. 3/4분기(7~9월)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피크임금은 '15년 총 급여를 임금피크제 적용일 수로 환산하여 산정
- ☞ 분기별 피크임금 : 연간('15.1.1~12.31) 총 급여 × [임금피크제 적용 일수 (7.1~9.30, 92일) / 365]
- ☞ 분기별 피크임금과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확인한 해당 연도의 분기('16.7.1~9.30) 임금과 비교하여 감액여부 및 감액비율 판단

- 해당 연도의 분기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 등을 통해 확인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를 통해 확인한 1·2·3·4분기 임금의 총 합계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임금을 확정

**< 분기 단위 지원금 산정방법 >**

❖ 지원금 계산식

$$[\text{①(해당 분기 피크임금)} \times \text{②(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text{③(100분의 90)}] - [\text{④(해당 분기 근로 소득)} - \text{(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 ① 피크임금 :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분기 단위로 환산한 금액
- ② 연도별 임금인상률 : 연 단위 신청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 ③ 100분의 90 :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 감액률
- ④ [(해당 분기 근로소득)-(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② 월 단위 지원금 지급

-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크 임금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를 월별 피크 임금으로 환산

**< 월 단위 지원금 산정시 피크임금 환산 방법 >**

○ '16.12.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16. 12월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피크임금은 '15년 총 급여를 임금피크제 적용일 수로 환산하여 산정

☞ 월별 피크임금 : 연간('15.1.1~12.31) 총 급여 × [임금피크제 적용 일수 (12.1~12.31, 31일) / 365]

☞ 월별 피크임금과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확인한 해당 연도의 월('16.12.1~12.31) 임금과 비교하여 감액여부 및 감액비율 판단

- 해당 연도의 월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 등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한 월별 임금의 총 합계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임금을 확정



< 월 단위 지원금 산정방법 >

❖ 지원금 계산식

[①(해당 월 피크임금) × ②(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③(100분의 90)] - [④(해당 월 근로 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 ① 피크임금 :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② 연도별 임금인상률 : 연 단위 신청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 ③ 100분의 90 :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 감액률
- ④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④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내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이 포함된 경우 산정 방법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15.12.7.>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2008.9.19.>
5. 정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고시(2015.12.4. 시행) >**

제4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산정시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금 산정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 중 근로자 귀책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중 정직이 아닌 감봉 처분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부분과업 등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산정기간에 포함
  - 이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은 동 행위가 없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임금을 추산하여 반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유 관련 적용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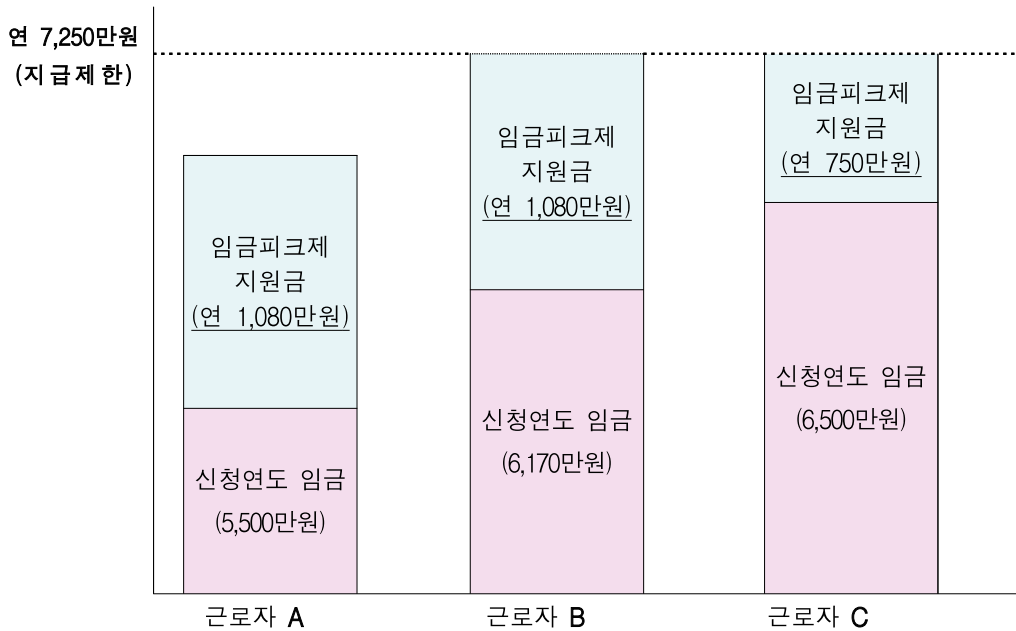
- ❖ ‘16.1.1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적용을 받게 된 근로자 A가 ’16.4.1.~ 7.31까지 휴직하고 연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
  - \* 근로자A ’15년 임금총액은 6,000만원, ’1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는 2,800만원
  - 근로자 A의 피크 임금은 휴직기간(‘16.4.1.~7.31까지 12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
    - ☞ 3,995만원[=6,000만원×(‘16.4.1.~7.31까지 122일을 제외한 243일/365일)]
  - 근로자 A의 휴직기간(‘16.4.1.~7.31까지 122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피크임금 3,995만원 보다 1,195만원 감액되었고 감액율은 30%임
  - 따라서 지원금은 피크임금의 90%인 35,955,000원 (=39,950,000원×90%)에서 해당 연도 임금 28,000,000원을 뺀 7,955,000만원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임
- ❖ 근로자 A가 분기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라면 2분기 (‘12.4.1.~ 6.30까지) 전체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3분기는 7월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



지급 한도내에서 지원

①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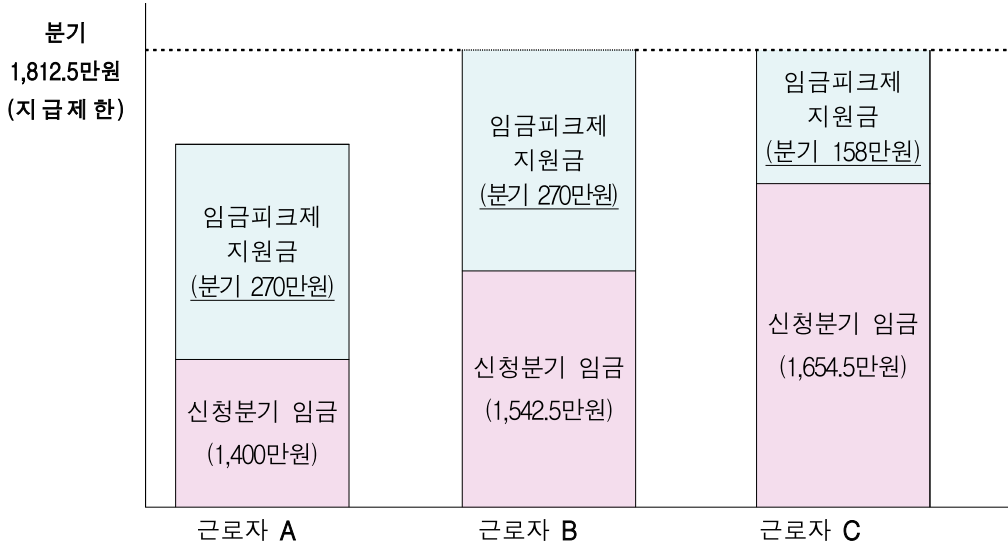
- 1,080만원\* (15.12.4 고시)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감액 이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7,250만원\*\* (15.12.4 고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연도 중 임금피크제 적용, 중간 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지원한도인 1,080만원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내에서 지원
- 연간 임금과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7,250만원×적용일수/36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② 분기 단위 지원금 지급

- 2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감액 이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분기 중 임금피크제 도입, 중간 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해당 분기 미만인 경우에는 분기 지원한도인 270만원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내에서 지원
  - \* '16.2.28.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자는 1,740,000원(270만원×58일/90일)이 분기당 지원금 지급 한도
- 해당 분기별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연간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7,540원으로 지원 제한금액인 7,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 (7,540만원-7,250만원=290만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

(단위 : 만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피크연도 임금	10,000	2,500	2,500	2,500	2,500
당해연도 임금	7,000	2,250	2,250	1,250	1,250
피크임금의 90%	9,000	2,250	2,250	2,250	2,250
감액률	30%	10%	10%	50%	50%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산정액	540	-	-	270 (최대지원한도)	270 (최대지원한도)
임금+지원금액	7,540	2,250	2,250	1,520	1,520



○ 분기별 신청시와 연도별 신청시 지원금을 비교하여 정산

- 4분기(4분기 전에 지급이 종료될 경우에는 마지막 신청시)에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를 통해 확인한 해당연도 임금(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제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연도 임금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 분기별로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액과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비교하여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 차액만큼 추가 지급(A사례)
  - ▲ 분기별로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액과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비교하여 분기별로 지급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 차액만큼 환수(B사례)
  - ▲ 분기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였으나 연 단위 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 임금(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제외)이 기준 감액률(10%) 이상 감액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수(C사례)

< 분기별 신청시와 연도별 신청시 정산 사례 >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A사	피크연도임금	6,000	1,500	1,500	1,500	1,500
	① 피크임금의 90%	5,400	1,350	1,350	1,350	1,350
	② 당해연도 임금	4,900	800	1,400	1,300	1,400
	③ 분기 정산 지원금액	320	270 (분기별 최대 지원금액)	-	50	-
	④ 연 단위 지원금액 (①-②)	500				
	추가지급(④-③)	180				
B사	피크연도임금	6,000	1,500	1,500	1,500	1,500
	① 피크임금의 90%	5,400	1,350	1,350	1,350	1,350
	② 당해연도임금	5,100	1,300	1,100	1,200	1,500
	③ 분기 정산 지원금액	450	50	250	150	-
	④ 연 단위 지원금액 (①-②)	300				
	환수금액(④-③)	150				
C사	피크연도임금	6,000	1,500	1,500	1,500	1,500
	① 피크임금의 90%	5,400	1,350	1,350	1,350	1,350
	② 당해연도임금	5,410	1,300	1,100	1,510	1,500
	③ 분기 정산 지원금액	300	50	250	-	-
	④ 연 단위 지원금액 (①-②)	0	(①-②가 음수이면 지원금 없음)			
	환수금액(④-③)	300				

③ 월 단위 지원금 지급

○ 월 단위 신청시에도 연 단위 신청시와 일치하도록 정산

- 월 단위 신청시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과 비교하여 기준 감액률(10%) 이내로 감소한 달이 많을 경우 신청인에게 연 단위로 정산할 경우 사후에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

② 지원 기한

○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어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18.12.31.까지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 고용 기간이 '18.12.31. 이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지급

\* 최초로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18.12.31. 사이에 임금감액률이 기준감액률(10%) 보다 적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8.12.31.까지만 지원

\* '18.1.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의 경우도 '18.12.31까지 지원금 지급

- '2018.12.31.까지 지급'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2018.12.31.까지 감액된 임금이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

##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1 지원금 신청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매 분기 및 매월 다음달 말일) 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다만,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지점·지사·공장 등)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가능
    - \* (예시 1) A은행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중구(서울고용센터 관할)이나 근로자가 대전 지점(대전청 관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전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 (예시 2) A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서울남부고용센터 관할)이나 근로자가 광주 공장(광주고용센터 관할), 천안 공장(천안고용센터 관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광주고용센터·천안고용센터에 각 신청 가능

### 2 제출 서류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52호의3 서식)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서면(10인 미만 사업장) 등
    - \* 단체협약,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서면 등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정년, 임금감액 연령, 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 시행일 등 확인
- 피크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 임금 대비 기준감액률(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연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피크 임금 연도 및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 \* 피크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분기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피크임금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해당 분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1부를 제출
  - \* 해당연도 4분기 또는 마지막 신청 시에는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제출받아 확인
- 월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피크임금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해당 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1부를 제출
  - \* 해당연도 12월 또는 마지막 신청 시에는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제출받아 확인

### ③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및 지급

-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 지원 금액 등을 확인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청할 경우에는 4분기 또는 12월분 지원금 신청시 연간 총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됨을 안내
- 정산 결과에 따라 기준감액률(10%) 미만 감액된 경우와 과다 지급분 발생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5 적용례 및 기타 사항

### 1 적용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시행일('15.12.4)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적용함이 원칙
  -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일('17.1.1) 이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적용대상이 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시행일('15.12.4) 이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시행일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40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당 제도의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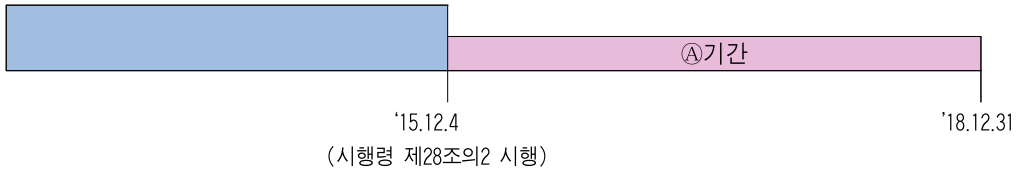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시행일('15.12.4)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도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령 제28조의2 적용 가능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적용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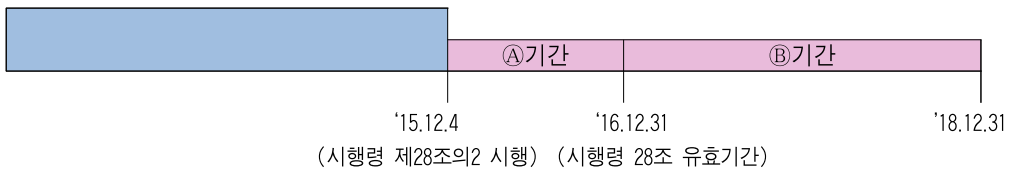
①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 A기간에 임금피크제를 새롭게 시행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는 근로자는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지급조건으로 '18.12.31까지 지원
- 다만, '15.12.4~'18.12.31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적용되는 근로자는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선택 가능(시행령 제28조 유효기간이 '15.12.31까지이기 때문임)

(예시) '16.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근로자  
⇒ 시행령 제28조의2 및 개정 고시에 따른 요건으로 '18.12.31까지 지원금 지급

②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 ☞ A기간에 임금피크제를 새롭게 시행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는 근로자는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선택 가능

\* 시행령 제28조 유효기간(300인 미만)이 '16.12.31까지이고 제28조와 제28조의2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므로 '16.12.31까지 적용 근로자는 유리한 사항 선택

(예시) '16.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근로자  
⇒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28조의2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선택이 가능하되,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요건에 따라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제28조의2에 따른 경우 '18.12.31까지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른 기준감액률이 모두 10%이므로 제28조에 따라 5년간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

- ☞ B기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는 근로자는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지급조건으로 '18.12.31까지 지원

(예시) '17.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근로자  
⇒ 시행령 제28조의2 및 개정 고시에 따른 요건으로 '18.12.31까지 지원금 지급



## ② 지원금 상호 조정

### □ 적용 원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중 하나의 지원금을 선택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속하여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각 선택할 경우 해당 지원요건 및 지원기한에 따른 시행령 규정 및 관련 고시를 각 적용
  - 따라서, 지원금 지원요건, 지원한도, 지원기한, 소득제한 한도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고용보험법 시행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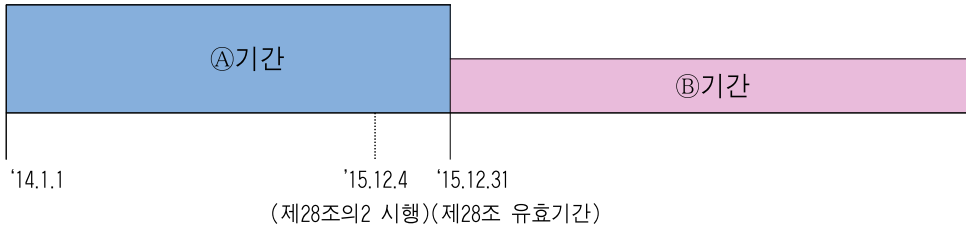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4>

### □ 적용 사례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유효기간 내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
    - \* 고용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지원금(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유효기간
      - ▲ 300인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15.12.31까지 적용 대상
      - ▲ 300인 미만, 국가지방자치단체 : '16.12.31까지 적용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 내용) 및 관련 고시(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시 내용)를 각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선택 적용 사례 ① >

◇ '14~'15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기간에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행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의 경우 '15.12.4 이후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①시행령 제28조 (지원기간 : 최초 적용시부터 5년 범위 내) 또는 ②시행령 제28조의2(지원기간 : '18.12.31까지) 중 선택 가능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우 기준감액률은 연차에 따라 10%, 15%, 20%, 제28조의2에 따른 경우 연차 구분없이 10% 적용

(예시) '14.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14.7.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의 경우, '15.12.4 이후 임금감액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법(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요건에 동시에 해당함을 전제)

⇒ 시행령 제28조를 선택할 경우 : 시행령 제28조 지급요건 및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시('14년)에 따라 지원금 지급(임금피크제 최초 적용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급)

⇒ 시행령 제28조의2를 선택할 경우 : 시행령 제28조의2 지급요건 및 개정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최대 '18.12.31까지 지급)

\* 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을 선택하는 경우 '18.12.31 이전에 적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5년 범위내에서 지급

\* '15.12.4 이전 임금감액분은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하여 처리

☞ ㉠기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기간에 임금피크제에 처음 적용이 되는 근로자는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요건으로 '18.12.31까지 지원(선택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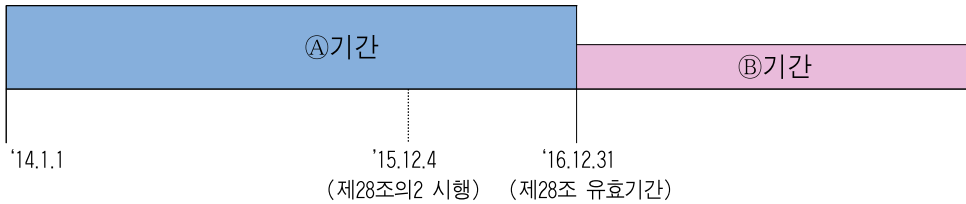
(예시) '14.7.1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16.1.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16.1.1 이후 임금감액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법(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

⇒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요건 및 개정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지원기간 : '18.12.31까지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선택 적용 사례 ② >

◇ '14~'15년에 임금피크제 시행한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 A기간에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행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의 경우 '15.12.4 이후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①시행령 제28조 (지원 기간: 최초 적용시부터 5년 범위 내) 또는 ②시행령 제28조의2(지원기간: '18.12.31까지) 중 선택 가능

-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제28조에 따를 경우에도 기준감액률은 10%를 적용, 다만, 고시는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연도의 고시 적용

(예시) '14.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15.1.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15.12.4 이후 임금감액분에 대한 지급방법(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요건에 동시에 해당함을 전제)

- ⇒ 시행령 제28조를 선택할 경우 : 시행령 제28조 지급요건 및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시('14년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임금피크제 최초 적용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급)
- ⇒ 시행령 제28조의2를 선택할 경우 : 시행령 제28조의2 지급요건 및 개정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최대 '18.12.31까지 지급)
  - \* 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을 선택하는 경우 '18.12.31 이전에 적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5년 범위내에서 지급
  - \* '15.12.4 이전 임금감액분은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하여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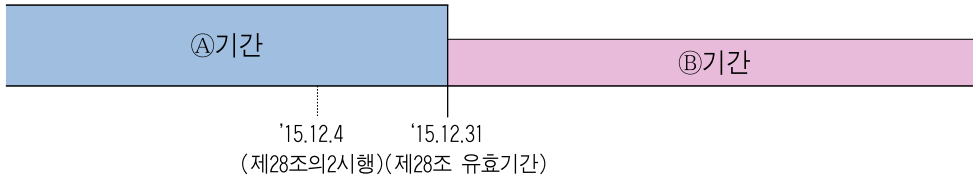
☞ A기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B기간에 임금피크제에 처음 적용이 되는 근로자는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요건으로 '18.12.31까지 지원(선택 불가)

(예시) '14.7.1 임금피크제를 시행 사업장에서 '17.1.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되는 근로자의 경우 '17.1.1 이후 임금감액분에 대한 지급방법(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

- ⇒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요건 및 개정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 : '18.12.31까지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선택 적용 사례 ③ >**

◇ '13년말 이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13.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A기간에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의 경우 '15.12.4 이후에 제28조, 제28조의2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①시행령 제28조(지원기간 :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 또는  
 ②시행령 제28조의2(지원기간 : '18.12.31까지) 중 선택 가능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 감액률을 적용, 제28조의2에 따른 경우 연차 구분없이 10% 적용

▪ 종전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022호, 2013.12.24) 제13조 :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제1호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예시)** '12.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14.1.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의 경우, '15.12.4 이후 임금감액분에 대한 지급방법(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요건에 동시에 해당함을 전제)

⇒ 시행령 제28조를 선택할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 제28조 지급요건 및 당시 고시('12년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지원기간 :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

⇒ 시행령 제28조의2를 선택할 경우 : 시행령 제28조의2 지급요건 및 개정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지원기간 : '18.12.31까지 지급)

\* 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을 선택하는 경우 '18.12.31 이전에 적용기간(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기간 범위내에서 지급

\* '15.12.4 이전 임금감액분은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하여 처리

☞ '13.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B기간에 임금피크제에 처음 적용이 되는 근로자는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 요건으로 '18.12.31까지 지원(선택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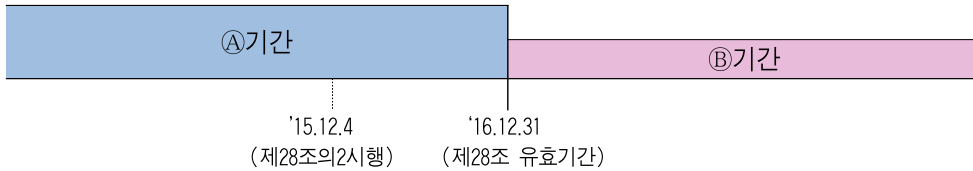
**(예시)** '12.1.1부터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6.1.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16.1.1 이후 임금감액분에 대한 지급방법(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

⇒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요건 및 개정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 : '18.12.31까지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선택 적용 사례 ④ >

◇ '13년말 이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 ☞ '13.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A기간에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의 경우 '15.12.4 이후에 제28조, 제28조의2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 ①시행령 제28조(지원기간 :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 또는
  - ②시행령 제28조의2(지원기간 : '18.12.31까지) 중 선택 가능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감액률을 적용, 제28조의2에 따른 경우 연차 구분없이 10% 적용

▪ 종전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022호, 2013.12.24) 제13조 :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제1호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예시) '12.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15.1.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온 근로자의 경우, '15.12.4 이후 임금감액분에 대한 지급방법(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요건에 동시에 해당함을 전제)

- ⇒ 시행령 제28조를 선택할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 제28조 지급요건 및 당시 고시('12년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지원기간 :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
- ⇒ 시행령 제28조의2를 선택할 경우 : 시행령 제28조의2 지급요건 및 개정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지원기간 : '18.12.31까지 지급)
  - \* 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을 선택하는 경우 '18.12.31 이전에 적용기간(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기간 범위내에서 지급
  - \* '15.12.4 이전 임금감액분은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하여 처리

- ☞ '13.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B기간에 임금피크제에 처음 적용이 되는 근로자는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 요건으로 '18.12.31까지 지원(선택 불가)

(예시) '12.1.1부터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7.1.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17.1.1 이후 임금감액분에 대한 지급방법(시행령 제28조의2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

- ⇒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요건 및 개정 고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 : '18.12.31까지 지급)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동시 해당할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과 제28조의3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3에서 규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 불가

③ 기타 사항

지원금 소멸시효 산정

○ 해당 월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권리 행사가능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권이 소멸되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월의 다음달 첫날임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 관련 질의 회신 >

○ '08.2.2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연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분기 단위 신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초로 권리행사 할 수 있는 분기 익월 첫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함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고용보험법 제107조). 따라서 '06.1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청구 가능일은 '06.4.1.부터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인 '09.3.31.까지 신청해야 지급 가능

지원금 상속

○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아 오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받아 행사 가능

-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 Ⅲ 정년연장형 · 재고용형 · 근로시간단축형(제28조)

#### 1 지원 요건

##### 1 사업장 요건

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임금피크제 시행

○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실시

○ 근로자 대표 개념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
  - \*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예시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의 경우도 근로자 대표권 행사 가능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시행 및 내용을 확인

- 임금피크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시행여부가 규정되어야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시행여부 및 세부 사항(감액률, 피크 연령, 시행시기, 적용대상 등) 확인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임금피크제 시행여부 및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 서면으로 확인
  - \* 임금피크제 시행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음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
    - 해당 사업장의 정년은 기존보다 늘리되 56세 이상이어야 함
  - 임금감액 시점은 55세 이후이어야 하며, 55세 이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 55세 이후이므로 반드시 55세부터 임금 감액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6세, 57세, 58세, 59세 등에 임금 감액을 시작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임금 감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액도 가능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호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임金的 감액으로 보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고시 >**

제4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 서면(10인 미만 사업장)등을 통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고 있는지 확인



## 나.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 임금피크제 시행

- 사업주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통해 정년퇴직자 재고용 근거,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 및 세부 사항(감액률, 시행시기, 기간 등) 확인
  - \* 재고용은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고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3개월 이후 재고용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참조)

#### < 업무 TIP >

- ❖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사전적으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해당 사업장에서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근로자의 재고용이 사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피크제의 세부사항(감액률, 피크 연령, 시행시기, 기간, 적용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대상에 포함

-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일 것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서면 등에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서면 등에 정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임금피크제 실시

○ 근로시간 단축형 I :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연계)

\* 근로시간 단축형 I 은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 참조

○ 근로시간 단축형 II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재고용형 임금피크제와 연계)

\* 근로시간 단축형 II 은 재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 참조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2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이 중단없이 지속되는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함

\*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18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계약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 기업의 합병,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
-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어 임금이 감액된 이후 계속 근무기간이 18개월에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 피크임금에 비해 해당연도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감액

-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감액률 이상 감액되어야 함
- 피크 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 \* 피크 임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에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 반영하여 계산
- 해당연도 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연도에 지급받은 임금
- ① (정년연장형) 300인 이상 사업장 1년차(10%), 2년차(15%), 3년차 이후(20%),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없이 10%
- ② (재고용형) 300인 이상 사업장 20%, 300인 미만 사업장 10%
- ③ (근로시간단축형) 300인 이상·미만 모두 30%

< 연도별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5호)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임금인상률(%)	4.8	4.8	4.9	1.7	4.8	5.1	4.7	3.5	4.2	4.4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金の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기준
- 피크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 급여

- 해당연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 급여에서 해당연도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임금감액률은 피크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을 피크임금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이며, 임금감액률이 기준감액률을 초과한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

\* 임금감액률 :  $[(\text{피크임금} - \text{해당연도 임금}) / \text{피크임금}] \times 100$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임금감액률과 실제 임금감액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피크임금에 비해 해당연도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감액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

**< 적용 사례 >**

○ '14년 연간 7,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A가 '15.2.1. 정년연장형(60세)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15.2.1 ~ 12.31까지 총 46,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단, 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만족)

☞ 피크임금은 '14년 연간 임금(7,000만원)에 '15.2.1부터 12.31까지 사이의 적용 일수(334일)를 곱한 64,054,794원(=70,000,000원×334/365일)임

- '15.2.1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 A가 지급받은 임금은 46,000,000원이므로 피크임금 64,054,794원 보다 18,054,794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율은 28.2% 임

- 지원금액은 피크임금의 90%인 57,649,314원(=64,054,794원×90%)에서 임금 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지급받은 46,000,000원을 뺀 11,649,314원이나 지원제한 소득액이 1,080,000원이므로 1,080,000원을 지원

○ 해당연도 중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거나, 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피크 임금 계산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

\* 피크임금 : 연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 × (해당 일수/365일)



## 2 지원 제외 사유

### □ 연간 임금이 해당연도 고시에서 규정한 소득기준 초과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해당연도 고시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도별 고시에서 규정한 소득기준 금액 >**

- ❖ '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 5,760만원(고시 제2010-47호)
- ❖ '11.1.1~12.3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 6,800만원(고시 제2011-16호)
- ❖ '12.1.1~12.3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 5,760만원(고시 제2012-17호)
- ❖ '13.1.1~12.3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 5,760만원(고시 제2013-8호)
- ❖ '14.1.1~12.3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 6,870만원(고시 제2013-81호)
- ❖ '15.1.1~12.3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 6,870만원(고시 제2014-79호)
- ❖ '15.12.4~'16.12.31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 7,250만원(고시 제2015-85호)

- 분기별 또는 월별로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도 1년이 종료된 이후 연간 총 합계액(임금피크제 지원금 제외)이 고시에서 규정한 소득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수 조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을 최종 확인

- 연도 중 임금피크제 적용, 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

\* 2015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2015.7.1.부터 임금피크제에 적용받는 경우 : 36,632,329원 [15년 고시금액(6,870만원) × 184일(7.1~12.31까지 총 일수)/365일]

\*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2016.1.1.~6.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35,952,054원 [16년 고시금액(7,250만원) × 181일(1.1~6.30까지 총 일수)/365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소득기준 금액에 대한 경과규정

- ① '10. 8. 3.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0-47호)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이 5,760만원 이상인 사람
- ② '11. 2. 28.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1-16호)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6,800만원을 초과한 사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③ '12. 1. 20.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2-17호)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5,760만원을 초과한 사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2011.1.1.부터 2011.12.31. 기간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1-16호(2011.2.28.)에 따라 지급



④ '13. 1. 25.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3-8호)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5,760만원을 초과한 사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2011.1.1.부터 2011.12.31. 기간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1-16호(2011.2.28.)에 따라 지급
- 2012.1.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2-17호(2012.1.20.)에 따라 지급

⑤ '13. 12. 31.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3-81호)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6,870만원을 초과한 사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2011.1.1.부터 2013.12.31. 기간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

⑥ '14. 12. 31.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4-79호)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6,870만원을 초과한 사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2011.1.1.부터 2014.12.31. 기간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

⑦ '15. 12. 4.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5-85호)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만원을 초과한 사람

\* 개정 고시 시행일('15.12.4) 이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새롭게 시행한 사업장의 근로자(예시 : '16.1.1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2011.1.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



### 3 지원 금액 및 기한

#### 1 지원 금액

□ 피크임금 대비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진 금액

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10~20%(300인 미만 기업은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
  - \* 기준감액율: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은 연차 구분 없이 10%)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연간 최대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지원
-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연간 최대 720만원(분기별 180만원, 월별 60만원) 지원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사례 >**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피크임금보다 10~20% 이상 감액되어 해당연도 임금이 80~90% 이하로 낮아진 부분 ( ) 지원

연간 최대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지원

피크임금의 80~90%

근로자의 임금 곡선      피크임금

임금피크제 시행일(55세 이후)      기존 정년      연장된 정년(56세 이상)

최대 5년 이내 지원

○ '14년 연간 7,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15.1.1 정년연장형(60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5년 5,3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 방법(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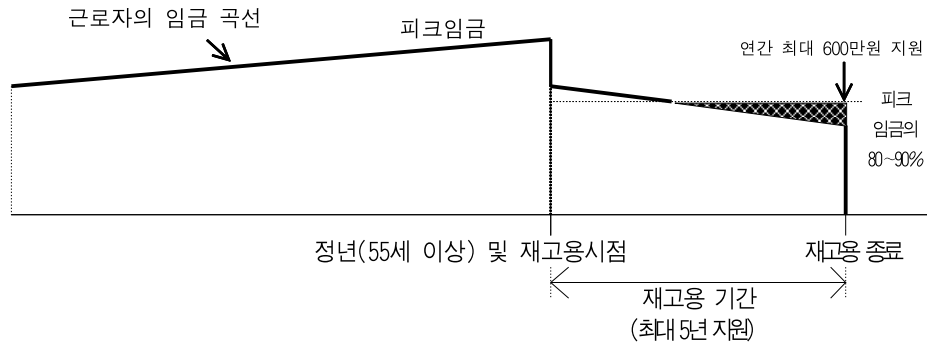
- 피크임금은 7,000만원이며, '15.1.1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해당 연도 임금은 피크 임금 7,000원 보다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율은 24.3%임
- 지원금액은 피크임금의 90%인 6,300만원(=7,000만원×90%)에서 해당연도 임금 5,3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임

나.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20%(300인 미만 기업은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
  - 연간 최대 600만원(분기별 150만원, 월별 50만원) 한도

<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사례 >

-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날부터 임금을 감액하여 임금이 피크임금보다 20% (300인 미만 기업은 10%) 이상 감액되어 해당연도 임금이 80%(300인 미만 기업은 90%) 이하로 낮아진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



- 정년을 57세(57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정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년 연간 5,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던 근로자가 정년퇴직 이후 '16.1.1. 재고용되어 '16년 연간 4,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 방법(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만족)
  - 피크임금은 5,000만원이며, '16년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해당 연도 임금은 피크임금 5,000만원 보다 1,000만원 감액되었고, 감액율은 20.0% 임
  - 따라서, 지원금액은 피크임금의 90%인 4,500만원(=5,000만원×90%)에서 해당 연도 임금 4,000만원을 뺀 500만원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임(해당 연도 임금 5,3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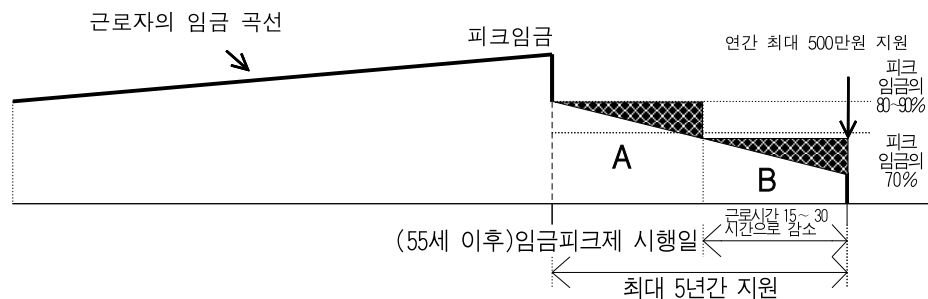


### 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I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이 감액된 날(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
  - 연간 최대 500만원(분기별 125만원, 월별 416,660원) 한도
-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
  - 시간 선택제 전환지원금의 간접노무비(월 20만원)를 지원 받는 근로자는, 지원요건 충족시 차액만 지원

####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I 사례 >

-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액된 부분(A, B)을 임금감액 시점 이후부터 최대 5년간 지원(연간 최대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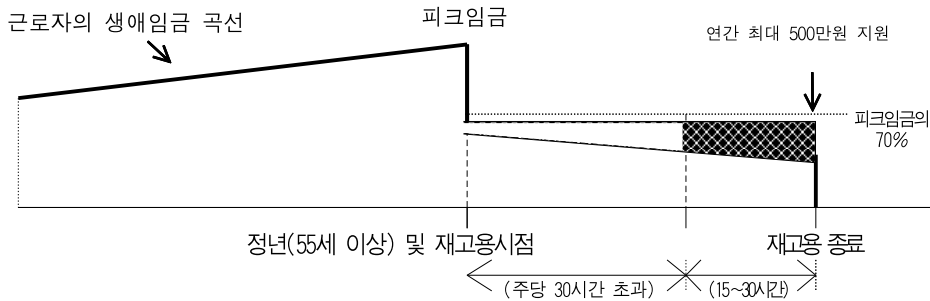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년연장형'으로 지원(연 최대 1,080만원/720만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지원(연 최대 500만원)

라.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Ⅱ(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 (근로자)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
  - 연간 최대 500만원(분기별 125만원, 월별 416,660원) 한도
-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
  - 시간제선택제 전환지원금의 간접노무비(월 20만원)를 지원 받는 근로자는, 지원요건 충족시 차액만 지원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I 사례 >

-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재고용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원(연 최대 500만원)



- 57세 정년퇴직자를 57세에 재고용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년차 35시간, 2년차 3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각 년도 지원금 산정방법(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만족, 임금은 피크임금 대비 1년차 25%, 2년차 35% 감소)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
  - 1년차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근로시간 단축형 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재고용형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재고용형 적용하여 지원가능
  - 2년차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근로시간 단축형을 적용받게 되며, 피크임금(정년퇴직 당시 임금에 1년차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보다 30% 이상 감액분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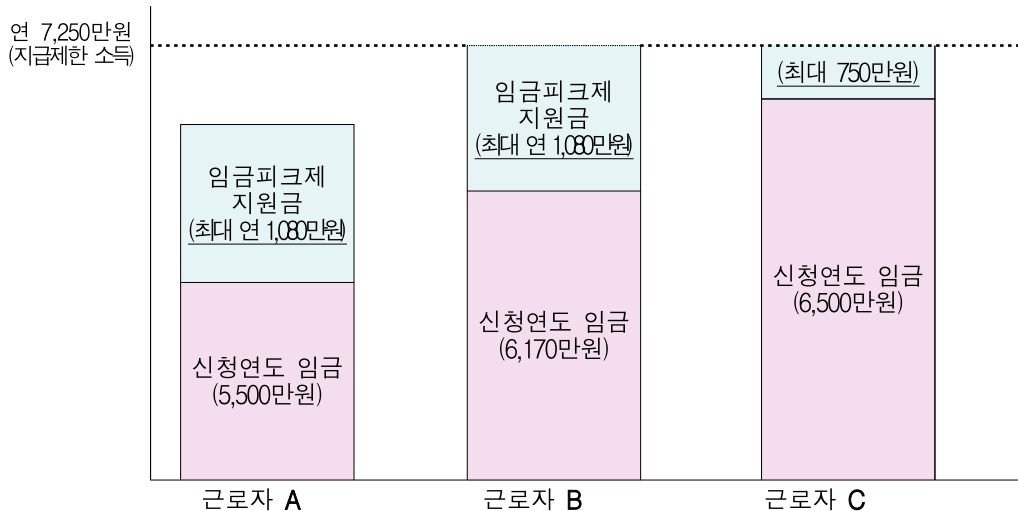
□ 지급 한도내에서 지원

①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

- 1,080만원\*('15.12.4 고시 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감액 이후 임금과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7,250만원\*\*('15.12.4 고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연간 지급 한도액은 대상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해당 연도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 (「지급한도 금액에 대한 경과규정」 참조)

\*\*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은 대상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해당 연도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지급한도 금액에 대한 경과규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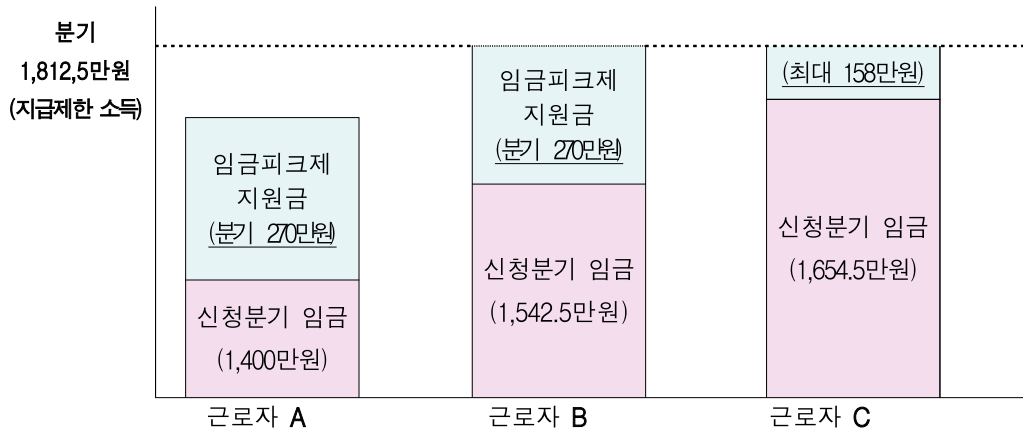


- 연도 중 임금피크제 도입, 중간 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지원한도인 1,080만원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내에서 지원
- 연간 임금과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7,250만원×적용일수/36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② 분기 단위 지원금 지급

- 2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감액 이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 지급 한도액은 대상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해당 연도 고시에서 정한 금액 적용(「지급한도 금액에 대한 경과규정」 참조)
- \*\*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은 대상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해당 연도 고시에서 정한 금액 적용(「지급한도 금액에 대한 경과규정」 참조)



- 분기 중 임금피크제 도입, 중간 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해당 분기 미만인 경우에는 분기 지원한도인 270만원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내에서 지원
- \* '16.2.28.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자는 1,740,000원(270만원×58일/90일)이 분기당 지원금 지급 한도
- 해당 분기별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연간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7,600만원으로 지원 제한금액인 7,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350만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

(단위 : 만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피크연도 임금	10,000	2,500	2,500	2,500	2,500
당해연도 임금	7,000	2,250	2,250	1,250	1,250
피크임금의 90%	9,000	2,250	2,250	2,250	2,250
감액률	30%	10%	10%	50%	50%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산정액	540	-	-	270 (최대지원한도)	270 (최대지원한도)
임금+지원금액	7,540	2,250	2,250	1,520	1,520



○ 분기별 신청시와 연도별 신청시 지원금을 비교하여 정산

- 4분기(4분기 전에 지급이 종료될 경우에는 마지막 신청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한 해당연도 임금(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제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연도 임금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 분기별로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액과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비교하여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 차액만큼 추가 지급(A사례)
- ▲ 분기별로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액과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비교하여 분기별로 지급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 차액만큼 환수(B사례)
- ▲ 분기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였으나 연 단위 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 임금(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제외)이 기준금액을 이상 금액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수(C사례)

< 분기별 신청시와 연도별 신청시 정산 사례 >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A사	피크연도임금	6,000	1,500	1,500	1,500	1,500
	① 피크임금의 90%	5,400	1,350	1,350	1,350	1,350
	② 당해연도임금	4,900	800	1,400	1,300	1,400
	③ 분기 정산 지원금액	320	270 (분기별 최대 지원금액)	-	50	-
	④ 연 단위 지원금액 (①-②)	500				
	추가지급(④-③)	180				
B사	피크연도임금	6,000	1,500	1,500	1,500	1,500
	① 피크임금의 90%	5,400	1,350	1,350	1,350	1,350
	② 당해연도임금	5,100	1,300	1,100	1,200	1,500
	③ 분기 정산 지원금액	450	50	250	150	-
	④ 연 단위 지원금액 (①-②)	300				
	환수금액(④-③)	150				
C사	피크연도임금	6,000	1,500	1,500	1,500	1,500
	① 피크임금의 90%	5,400	1,350	1,350	1,350	1,350
	② 당해연도임금	5,410	1,300	1,100	1,510	1,500
	③ 분기 정산 지원금액	300	50	250	-	-
	④ 연 단위 지원금액 (①-②)	0	(①-②가 음수이면 지원금 없음)			
	환수금액(④-③)	300				

③ 월 단위 지원금 지급

○ 월 단위 신청시에도 연 단위 신청시와 일치하도록 정산

- 월 단위 신청시 해당도 임금이 피크 임금과 비교하여 기준 감액률 이내로 감소한 달이 많을 경우 신청인에게 연 단위로 정산할 경우 사후에 환수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

□ 지급 한도 금액에 대한 경과규정

① '10. 8. 3.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0-47호)

- 지급액은 연간 600만원 한도.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합계가 5,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② '11. 2. 28.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1-16호)

- 지급액은 연간 600만원(근로시간단축형은 300만원) 한도. 다만, 해당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합계가 6,800만원(근로시간단축형은 4,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③ '12. 1. 20.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2-17호)

- 지급액은 연간 600만원(근로시간단축형은 300만원) 한도. 다만, 해당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합계가 5,760만원(근로시간단축형은 3,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2011.1.1.부터 2011.12.31. 기간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1-16호(2011.2.28.)에 따라 지급



- ④ '13. 1. 25.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3-8호)
  - 지급액은 연간 600백만원(근로시간단축형은 300만원) 한도. 다만, 해당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합계가 5,760만원(근로시간단축형은 5,0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2011.1.1.부터 2011.12.31. 기간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1-16호(2011.2.28.)에 따라 지급
  - 2012.1.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2-17호(2012.1.20.)에 따라 지급
- ⑤ '13. 12. 31.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3-81호)
  - 정년연장형(60세 이상 정년연장시 840만원, 56~60세 미만 정년연장시 720만원), 재고용형 600만원, 근로시간단축형은 500만원 한도, 다만, 해당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합계가 6,870만원(근로시간단축형은 6,0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2011.1.1.부터 2013.12.31. 기간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
- ⑥ '14. 12. 31.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4-79호)
  - 정년연장형(60세 이상 정년연장시 1,080만원, 56~60세 미만 정년연장시 720만원), 재고용형 600만원, 근로시간단축형은 500만원 한도, 다만, 해당연도 근로 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합계가 6,870만원(근로시간단축형은 6,0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2011.1.1.부터 2014.12.31. 기간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

⑦ '15. 12. 4. 고시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고시 2015-85호)

- 정년연장형(60세 이상 정년연장시 1,080만원, 56~60세 미만 정년연장시 720만원), 재고용형 600만원, 근로시간단축형은 500만원 한도, 다만, 해당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합계가 7,250만원(근로시간 단축형은 6,3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010.12.3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시 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
- 2011.1.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

지원금 산정방법

①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

- 피크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과 해당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외)을 비교하여 기준 감액률 이상 낮아진 금액 지원
  - \*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의 경우는 피크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과 해당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을 비교
  - \* 임금피크제 적용 2년차 이상의 경우는 피크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과 해당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에서 지원금 제외)을 비교



- 다만, 연도 중 임금피크제 적용, 중간 퇴직 등으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 등을 통해 확인
- 피크연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를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피크연도 연간임금×적용일수/365일)

**< 연도 단위 지원금 산정방법 >**

❖ 지원금 계산식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②(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③(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④(해당 연도 근로 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로 계산

- ①(피크임금)은 시행령에서 정의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의미
- ②(연도별 임금인상률)은 임금피크제 시행 다음 연도 이후에는 피크임금을 물가수준에 연동하여 계산함을 의미
- ③(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2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의미
  - \* 정년연장형 1년차는 100분의 90, 2년차는 100분의 85, 3~5년차는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근로시간 단축형은 100분의 70, 재고용형은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 \* '13.12.31.이전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은 도입연도 고시에 따름
- ④[(해당 연도 근로 소득)-(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② 분기 단위 지원금 지급

- 분기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크 임금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를 분기별 피크 임금으로 환산
- 해당 연도의 분기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 등을 통해 확인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한 1·2·3·4분기 임금의 총 합계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임금을 확정

**< 분기 단위 지원금 산정방법 >**

❖ 지원금 계산식

[①(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②(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③(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④(해당 분기 근로 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로 계산

- ①(해당 분기의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중 해당 분기의 임금을 의미
- ②(연도별 임금인상률)은 연 단위 신청 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
- ③(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은 연 단위 신청 시와 동일
- ④[(해당 분기 근로 소득)-(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분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③ 월 단위 지원금 지급

-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크 임금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를 월별 피크 임금으로 환산
- 해당 연도의 월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 등을 통해 확인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한 월별 임금의 총 합계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임금을 확정



< 월 단위 지원금 산정방법 >

❖ 지원금 계산식

[①(해당 월의 피크임금) × ②(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③(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④(해당 월 근로 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로 계산

- ①(해당 월의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중 해당 월의 임금을 의미
- ②(연도별 임금인상률)은 연 단위 신청 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
- ③(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은 연 단위 신청 시와 동일
- ④[(해당 월 근로 소득)-(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월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④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내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이 포함된 경우 산정방법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임금피크제 지원금 산정시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 중 근로자 귀책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중 정직이 아닌 감봉 처분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부분과업 등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산정기간에 포함
  - 이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은 동 행위가 없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임금을 추산하여 반영

**2 지원 기한**

임금피크제 유형별 지원 기한

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되,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지급
-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일정 기간동안 임금감액률이 기준감액률보다 낮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동 기간은 최대 지원기간에 포함

나.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되, 재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지급
-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일정 기간동안 임금감액률이 기준감액률보다 낮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동 기간은 최대 지원기간에 포함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기간은 통산하여 5년간 지급

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 (근로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
- (사업주)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때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기간 예시 >

사업장	임금 감액시기	기존 정년	연장된 정년	재고용 종료	지원기간	비 고
A	55세	55세	58세	-	55세 도달 이후~ 58세 도달(3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감액 개시일부터 고용기간동안 지원
B	56세	56세	63세	-	57세 도달 이후 ~ 62세 도달(5년)	최대 지원기간(5년) 적용
C	55세	55세	-	58세	55세의 재고용 시점 ~ 58세 재고용 종료(3년)	재고용된 날부터 고용기간동안 지원
D	57세	57세	60세	65세	57세 ~ 62세 도달(5년)	57~59세까지 정년연장형 지원(3년)+ 60~61 재고용형 지원(2년) :최대 지원기간(5년) 적용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에 각 지원기간 동안 지원



유효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15.12.31.(300인 미만 사업장은 '16.12.31.)
  - \* 고용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지원금(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유효기간
    - ▲ 300인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15.12.31까지 적용 대상
    - ▲ 300인 미만, 국가지방자치단체 : '16.12.31까지 적용 대상
  - 다만, '15.12.31.(300인 미만 사업장은 '16.12.31.)까지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기간까지는 지급
  - \* 최대 지원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해당 사업장에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당시 시행령 내용)에 따라 상이(붙임 참조)

##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① 지원금 신청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매 분기 및 매월 다음달 말일) 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다만,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지점·지사·공장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가능
    - \* (예시 1) A은행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중구(서울고용센터 관할)이나 근로자가 대전 지점(대전청 관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전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 (예시 2) A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서울남부고용센터 관할)이나 근로자가 광주 공장(광주고용센터 관할), 천안 공장(천안고용센터 관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광주고용센터·천안고용센터에 각 신청 가능

### ② 제출 서류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52호 서식)
  -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52호의2 서식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서면(10인 미만 사업장) 등
    - \* 단체협약,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서면 등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정년, 임금감액 연령, 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 시행일 등의 명시 여부를 확인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연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피크임금 연도 및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 \* 피크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분기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피크임금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해당 분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1부를 제출
  - \* 해당연도 4분기 또는 마지막 신청 시에는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제출받아 확인
- 월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피크임금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해당 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1부를 제출
  - \* 해당연도 12월 또는 마지막 신청 시에는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제출받아 확인

### 3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및 지급

-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 지원 금액 등을 확인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청할 경우에는 4분기 또는 12월분 지원금 신청시 연간 총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됨을 안내
- 정산 결과에 따라 기준감액률 미만 감액된 경우와 과다 지급분 발생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를 제출받아야 함

## 5 기타 사항

### 1 지원금 소멸시효 산정

- 해당 분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권리 행사가능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권이 소멸되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분기 익월 첫날임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 < 관련 질의회신 >

- '08.2.2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연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분기 단위 신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초로 권리행사 할 수 있는 분기 익월 첫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함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고용보험법 제107조). 따라서 '06.1분기 임금 피크제 지원금의 청구 가능일은 '06.4.1.부터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인 '09.3.31.까지 신청해야 지급 가능

### 2 타 지원금과의 중복시 조정

- 동일 대상기간,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 연장지원금이 동시에 지급되지 않아야 함

#### <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다. 이 경우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조정 >**

⑤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개월로 한다) 동안 지급한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미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적법하게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반납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관련 질의회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현 제40조 제2항,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및 제22조 제1항(현 제25조 제1항,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규정에 대한 해석〉

- 1)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영 제26조의3 제2항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내의 ‘신규장려금’과 ‘다수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조항의 규정취지가 다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2) 이와 관련하여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 각각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며, 본건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그 하나의 장려금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관련 질의회신 >**

〈적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반납과 여타 장려금의 재정산 지급 요구에 대한 검토〉

- 1) 사업주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동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바, 이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단 청약(신청)에 의한 승낙(장려금 지급결정)으로써 일개의 법률행위가 완성되었기 때문임. 나아가 적법하게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취소된다면 이는 행정행위의 공신력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그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임에 반하여 본건의 경우에는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2) 한편, 영 규정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에 대한 신청권 자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동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선택권자의 재량에 의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선택권자가 일단 하나의 경우를 선택하여 법률행위가 완료되었다면, 나머지의 경우를 다시 선택할 가능성은 부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보험 68430-625, 2000.7.11.)

-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시간제선택제 전환지원금의 간접노무비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미 간접노무비(월 20만원)를 지원받은 경우,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지원은 차액만 지원

**3 지원금의 상속 가능성**

-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아 오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받아 행사 가능. 따라서 유가족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4 고용보장 연령 이전에 해고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연장 연령 이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지급

##### < 관련 질의회신 >

- 고용연장형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아 오던 근로자를 고용연장연령 이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사업장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함
  -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지급(장애인고령자고용과-563, 2011.1.31.)

#### 5 노사 합의로 신청자에 한하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정년 연장기간, 임금감액율 등을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면 신청자에 한하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가능

**< 관련 질의회신 >**

- 노사가 합의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만55세(해당연도 말일)를 유지하되, 해당연도 말일까지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만57세로 연장하는 경우(임금감액률은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에 임금 피크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하고 적용대상, 연령, 임금감액율 등 제반 사항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당해 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일정 시점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가능하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지원금 지급도 가능함 고령사회 인력 정책팀- 244 (2011.3.28.)

**6 기타 경과 규정**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11.1.1부터 폐지됨에 따라 '11년부터는 새로이 사업장에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국가인권위 차별판단지침('07): 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 나이 도달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은 원칙적으로 연령차별
- 다만, '10.12.31. 이전에 이미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9조(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원요건에 따라 계속하여 지원금을 지급

**<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2603호, 2010.12.31.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의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경과규정에 따라 '15.1.1. 이후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부터 적용



**<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5955호, 2014.12.31.>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에서 '14.1.1.이후 정년을 재연장하면서 재연장한 기간에 임금피크제를 계속 도입할 경우,
  - '13.12.31.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기존 지원요건에 따라 계속 지원하고, '14.1.1.이후 새로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지원요건에 따라 지원

## IV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1 지원 요건

-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이 중단없이 지속되는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함
      - \*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18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계약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 기업의 합병,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
  - 근로시간 단축 시점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근로시간 단축 이후 계속 근무기간이 18개월에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 50세 이상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만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 생년월일 상 만 50세에 도달한 근로자부터 적용 대상
    - 근로시간 단축 시점에 만 5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이후 만 50세에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단축되었음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일부 근로자(직종별·부서별)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업무 TIP >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 저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불이익 변경 금지, 근로기준법 제94조)

○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2 지원 금액 및 기한

### ① 근로자 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1/2을 최대 2년간 지원

○ 소정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단축 이후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감소된 임금의 1/2을 지원

\* 소정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이 기준

지급 한도내에서 지원

○ 연도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만원

- 분기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만원, 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월별 지급한도액은 90만원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후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소득제한 기준 없음)

#### ①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과 해당 연도 임금(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을 비교하여 감소된 임금의 1/2 지원

\* 근로시간 단축 1년차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과 해당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을 비교

\* 근로시간 단축 2년차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과 해당연도 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에서 지원금 제외)을 비교



- 다만, 연도 중 근로시간 단축, 중간 퇴직 등으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 등을 통해 확인

**< 연도 단위 지원금 산정방법 >**

❖ 지원금 계산식

[①(영 제28조제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②(근로시간 단축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③(해당 연도 임금)] × (1/2)

- ①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에서 정의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
- ② 연도별 임금인상률 :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 다음 연도에는(2년차) 당초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산
- ③ 해당 연도 임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해당 연도 임금(「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연도별 임금인상률 반영 관련 적용사례 >**

❖ 근로시간 단축이 처음 적용된 다음연도(2년차)에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 임금이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17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 ① ‘17년도 지원금 산정 : ‘16년도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이 해당하므로 임금인상률 반영없이 ‘17년도 해당 임금과의 차액 계산
- ② ‘18년도 지원금 산정 : ‘16년도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이 해당하므로 ‘16년도 임금이 ‘17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18년도 해당 임금의 차액 계산

## ② 분기 단위 지원금 지급

- 분기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을 분기별 임금으로 환산

**< 분기 단위 지원금 산정시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환산 방법 >**

- '16.7.1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가 '16. 3/4분기(7~9월)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은 '15년 총 급여를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하여 산정
  - ☞ 분기별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연간('15.1.1~12.31) 총 급여 ×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 (7.1~9.30, 92일) / 365]
  - ☞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확인한 근로시간 단축 연도의 분기('16.7.1~9.30)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 감액여부 및 감액금액 판단

- 해당 연도의 분기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 등을 통해 확인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한 1·2·3·4분기 임금의 총 합계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임금을 확정

**< 분기 단위 지원금 산정방법 >**

## ❖ 지원금 계산식

[①(근로시간 단축 직전분기 임금) × ②(근로시간 단축 이후 연도별 임금 인상률) - ③(해당 분기 임금)] × (1/2)

- ① 근로시간 단축 직전분기 임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을 분기 단위로 환산한 금액
- ② 연도별 임금인상률 : 연 단위 신청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 ③ 해당 분기 임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해당 분기 임금(「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분기에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③ 월 단위 지원금 지급

-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을 월별 임금으로 환산

**< 월 단위 지원금 산정시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환산 방법 >**

○ '16.12.1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가 '16. 12월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은 '15년 총 급여를 근로시간 단축 적용 일수로 환산하여 산정

☞ 월별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연간('15.1.1~12.31) 총 급여 ×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 (12.1~12.31, 31일) / 365]

☞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확인한 근로시간 단축 연도의 월('16.12.1~12.31)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 감액여부 및 감액금액 판단

- 해당 연도의 월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 등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한 월별 임금의 총 합계액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임금을 확정

**< 월 단위 지원금 산정방법 >**

❖ 지원금 계산식

[①(근로시간 단축 직전 월 임금) × ②(근로시간 단축 이후 연도별 임금 인상률) - ③(해당 월 임금)] × (1/2)

- ① 근로시간 단축 직전 월 임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② 연도별 임금인상률 : 연 단위 신청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 ③ 해당 월 임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해당 월 임금(「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분기에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④ 근로시간 단축 기간 내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이 포함된 경우 산정 방법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 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15.12.7.>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2008.9.19.>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산정할때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 중 근로자 귀책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중 정직이 아닌 감봉 처분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부분과업 등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산정기간에 포함
  - 이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은 동 행위가 없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임금을 추산하여 반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유 관련 적용사례 >**

- ❖ '17.1.1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게 된 근로자 A가 '17.4.1.~ 7.31까지 휴직하고 연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
  - \* 근로자 A의 '16년 총 급여는 6,000만원, '17년 총 급여는 3,000만원
  - 근로자 A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은 휴직기간(4.1.~7.31까지 12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
    - ☞ 3,995만원[=6,000만원×('16.4.1.~7.31까지 122일을 제외한 243일/365일)]
  - 따라서 39,950,000원에서 해당 연도 임금 30,000,000원을 뺀 금액의 1/2인 497.5만원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임
- ❖ 근로자 A가 분기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라면 2분기('12.4.1.~ 6.30까지) 전체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3분기 중 7월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환산하여 산정

⑤ 분기별(월별) 신청시와 연도별 신청시 지원금을 비교하여 정산

- 4분기 또는 12월(4분기 또는 12월 전에 지급이 종료될 경우에는 마지막 신청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한 해당연도 임금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연도 임금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 분기별(월별)로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액과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비교하여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 차액만큼 추가 지급
  - ▲ 분기별(월별)로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액과 연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비교하여 분기별(월별)로 지급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 차액만큼 환수
  - ▲ 분기별(월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였으나 연 단위 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 임금(해당연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제외)이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보다 감소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수

## ② 사업주 지원

###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 수에 월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분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도 지급 제한
    -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제도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함에도 소정근로시간은 단축하되 연장근로 등을 통해 실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아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제한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의 간접노무비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미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간접노무비(월 20만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분만 지급

##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1 지원금 신청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매 분기 및 매월 다음달 말일) 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다만,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지점·지사·공장 등)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가능
    - \* (예시 1) A은행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중구(서울고용센터 관할)이나 근로자가 대전 지점(대전청 관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전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 (예시 2) A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서울남부고용센터 관할)이나 근로자가 광주 공장(광주고용센터 관할), 천안 공장(천안고용센터 관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광주고용센터·천안고용센터에 각 신청 가능
-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2 제출 서류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52호의3 서식)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서면(10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등
    - \* 단체협약,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서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

- 근로시간 단축 전과 단축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시간) 실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출퇴근 기록부 등)
  - (임금) 근로시간 단축 전과 단축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연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 분기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해당 분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1부를 제출
      - \* 해당연도 4분기 또는 마지막 신청시에는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제출받아 확인
    - 월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해당 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1부를 제출
      - \* 해당연도 12월 또는 마지막 신청시에는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제출받아 확인

### ③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및 지급

-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 지원 금액 등을 확인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의 경우 4분기 또는 12월분 지원금 신청시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됨을 안내
  - 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에 비해 해당연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거나 과다 지급분 발생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4 적용례 및 기타 사항

### 1 적용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시행일(15.12.4)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적용함이 원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40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지원금 상호 조정

#### 적용 원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요건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3에서 규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 불가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중 하나의 지원금을 선택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속하여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각 선택할 경우 해당 지원요건 및 지원기한에 따른 시행령 규정 및 관련 고시를 각 적용
  - 따라서, 지원금 지원요건, 지원한도, 지원기한, 소득제한 한도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4>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 요건과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의 간접노무비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미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간접노무비(월 20만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분만 지급

지원금 소멸시효 산정

- 해당 월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권리 행사가능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권이 소멸되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월의 다음달 첫날임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지원금 상속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아 오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받아 행사 가능
  -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별첨 1>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시 행 령	시행규칙
<p>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lt;개정 2010.12.31., 2013.1.25., 2013.12.24., 2014.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li> <li>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li> <li>3. 삭제 &lt;2013.12.24.&gt;</li> <li>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p>	<p>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lt;개정 2010.7.12., 2011.1.3., 2015.1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li> <li>2. 질병이나 부상</li> <li>3. 사업장의 휴업</li> <li>4. 삭제 &lt;2008.9.19.&gt;</li> <li>5. 쟁의행위</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li> </ol> <p>[제목개정 2015.12.7.]</p> <p>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임금피크제</p>

시행령	시행규칙
<p>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lt;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 2013.1.25., 2013.12.24., 2015.12.4.&gt;</p> <p>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p> <p>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p> <p>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p> <p>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p> <p>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p> <p>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p>	<p>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lt;개정 2011.1.3., 2012.1.20., 2013.1.25., 2014.6.17., 2014.12.31.&gt;</p> <p>1.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2.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1.1.3., 2014.12.31.&gt;</p> <p>[제목개정 2011.1.3.]</p> <p>제50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p>



시행령	시행규칙
<p>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lt;개정 2010.7.12, 2010.12.31., 2014.12.31.&gt;</p> <p>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lt;개정 2013.12.24.&gt;</p> <p>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 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12.31.&gt; [제목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5022호(2013.12.24.)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다음 구분에 따라 유효함.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 한다.</p> <p>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p>	<p>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p>1. 영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2.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7.]</p> <p>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p> <p>①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p>

시 행 령	시행규칙
<p>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p> <p>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p> <p>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p>	<p>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p>1.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2.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p> <p>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7.]</p>



시행령	시행규칙
<p>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12.4.]</p> <p>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에 따라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12.4.]</p> <p>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p>	

시행령	시행규칙
<p>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8.9.18., 2010.2.8., 2010.12.31., 2011.9.15.&gt;</p> <p>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한다. &lt;개정 2015.1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li> <li>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li> <li>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li> <li>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li> <li>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li> <li>6. 제28조의3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li> <li>7.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li> <li>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li> <li>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 비용 지원금</li> </ol>	



시행령	시행규칙
<p>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lt;개정 2008.9.18., 2010.12.31., 2011.9.15.&gt;</p> <p>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lt;개정 2010.7.12., 2010.12.31.&gt;</p> <p>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lt;신설 2012.1.13.&gt;</p> <p>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lt;개정 2015.12.4.&gt; [제목개정 2010.12.31.]</p>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40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당 제도의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4.6.17>

## 년 제 차( 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재직기간	⑤정년 세
사업장	⑥사업체명	⑦대표자
	⑧업종명	⑨업종코드
	⑩상시근로자수 명	⑪소재지 □□□-□□□ (전화번호: )
임금 피크제	⑫임금피크제 도입연도	년 ⑬피크연령 세
	⑭임금피크제 유형 [ ] 정년연장형 [ ] 근로시간단축형 [ ] 재고용형	
	⑮근로시간단축 변경전 ( )시간 변경후 ( )시간	⑯재고용시점 년 월 일( 세)
	⑰고용연장연령 (고용보장연령) 세	⑱본인적용시점 년 월 일
	⑲연간피크임금 원	⑳분기피크임금 원 ㉑월피크임금 원
신청 연도 (분기,월) 임금	⑳신청연도	년( 분기) ㉒신청연도(분기,월) ( 월) 근무기간 ~ . . .
	㉔연도임금총액 원	㉕분기임금총액 원 ㉖월임금총액 원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휴업·휴직·휴가, 정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신청내용	㉗감액사유	㉘감액임금 원
	㉙조정임금 원	㉚임금차액 원
	㉛임금감액비율 %	㉜신청액 원
㉝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근로자 확인	(*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 람	담 당	과장	청장·지청장
	①지급결정액 원	②신청금액 원					
처리	③증감액 및 사유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	-----------------------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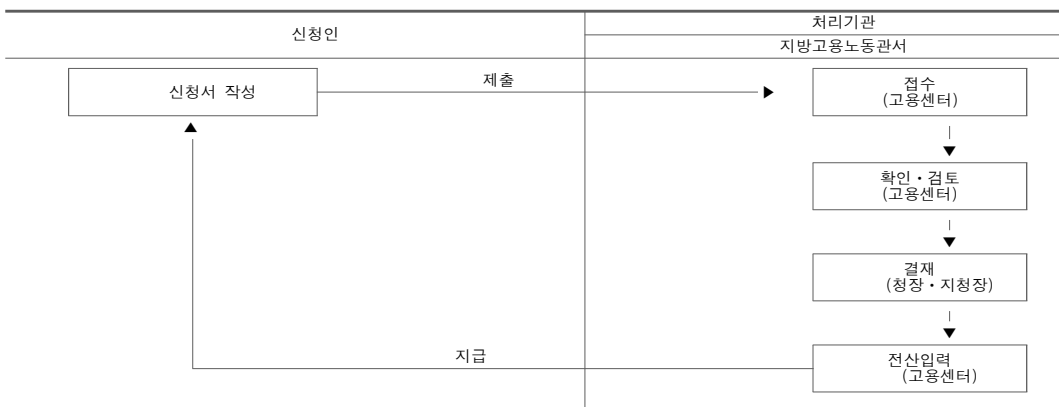
- ⑤정년은 정년연장형 및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연장 전 정년을 기재하고, 재고용형 및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현재 정년을 기재합니다.
- ⑩상시근로자 수는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⑬피크연령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기 직전연도의 연령을 기재합니다.
- ⑭임금피크제 유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정년연장형(제1호), 근로시간단축형(제2호), 재고용형(제4호) 또는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각각 "√" 표시를 합니다.
- ⑮근로시간단축은 임금피크제 유형이 근로시간단축형인 경우 변경 전·후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⑯재고용시점은 정년 후 재고용하는 연령과 재고용으로 고용연장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 ⑰고용연장연령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계속근로하게 되는 연령을 기재합니다.(2010.12.31. 이전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시 고용보장연령을 표시합니다.)
- ⑱본인적용시점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 적용근로자의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 ⑲ 피크임금(⑳,㉑)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버림).

※ 예시) 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7년도 1,000만원일 경우 '10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08·'09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10,668,330원(1,000만원 × 104.9% × 101.7%)을 기재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4.8	5.1	4.7	3.5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10.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㉔,㉕,㉖)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㉑조정임금의 계산은 [피크임금(⑳,㉑)]에서 유형별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고, 원단위는 버림니다.  
※ 유형별 조정비율: 정년연장형 1년 이내 90%, 2년 초과 3년 이내 85%, 3년 초과 5년 이내 80%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90%), 재고용형 80%(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90%), 근로시간 단축형 70%
12. ㉒임금차액은 [피크임금(⑳,㉑)]에서 [신청 연도(분기, 월) 임금총액(㉔,㉕,㉖) + 감액임금(㉗)]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13. ㉓임금감액비율은 [㉒임금차액 ÷ 피크임금(⑳,㉑)]으로 계산하며, 유형별 기준감액비율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유형별 기준감액비율: 정년연장형 1년 이내 10%, 2년 초과 3년 이내 15%, 3년 초과 20%(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재고용형 20%(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근로시간 단축형 30%
14. ㉔신청액은 [㉑조정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㉔,㉕,㉖) + 감액임금(㉗)]을 뺀 금액을 기재하되, 정년연장형 840만원(분기 210만원, 월 70만원), 재고용형은 600만원(분기 150만원, 월 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 연, 분기, 월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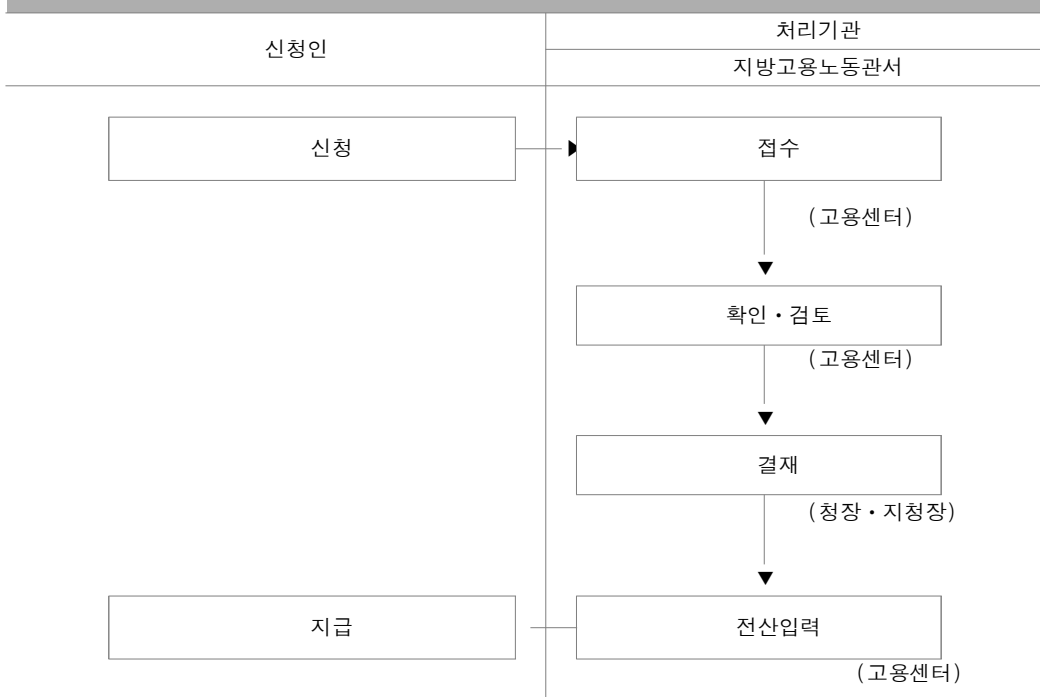


(제2쪽)

작성방법

1. ②의 총 개월 수는 ①의 지원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기간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2. ③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②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또는 신규인력채용지원)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②에  $[2(\text{개월}) \times 3(\text{명})] + [1(\text{개월}) \times 2(\text{명})] = 8\text{개월}$ 을 표시  
 - ③에  $\langle \text{해당 고시금액} \rangle / 31\text{일} \times 17\text{일}(1. 15. \sim 1. 31.) \times 3(\text{명}) + \langle \text{해당 고시금액} \rangle / 31\text{일} \times 27\text{일}(3. 5. \sim 3. 31.) \times 1(\text{명})$ 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해당 연도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3. 첨부서류를 준비할 때에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 <신설 2015.12.7.>

## 년 제 차( 분기, 월) [ ] 임금피크제 지원금 [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재직기간	⑤정년 세	
사업장	⑥사업체명	⑦대표자	
	⑧업종명	⑨업종코드	⑩상시근로자수 명
	⑪소재지	(전화번호: )	
임금 피크제 지원금	⑫임금피크제 도입연도	년	⑬피크연령 세
	⑭본인 적용시점	년 월 일( 세)	
	⑮연간 피크임금 원	⑯분기 피크임금 원	⑰월 피크임금 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⑱소정근로시간	변경 전 ( )시간	변경 후 ( )시간
	⑲근로시간 단축 시점	년 월 일( 세)	
	⑳근로시간 단축 전 연 임금 원	㉑근로시간 단 축 전 분기 임금 원	㉒근로시간 단축 전 월 임금 원
신청 연도 (분기, 월) 임금	㉓신청연도	년( 분기) ( 월)	㉔신청연도 (분기, 월) 근무기간
	㉕연도 임금총액 원	㉖분기 임금총액 원	㉗월 임금총액 원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휴업·휴직·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㉘감액사유
			㉙감액임금 원
신청내용	㉚조정임금 원	㉛임금차액 원	
	㉜임금감액비율 %	㉝신청액 원	
	㉞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근로자 확인	(*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신 람	담 당	과 장	청장·지청장
처리	①지급결정액 원		②신청금액 원				
	③증감액 및 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임금피크제 지원금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 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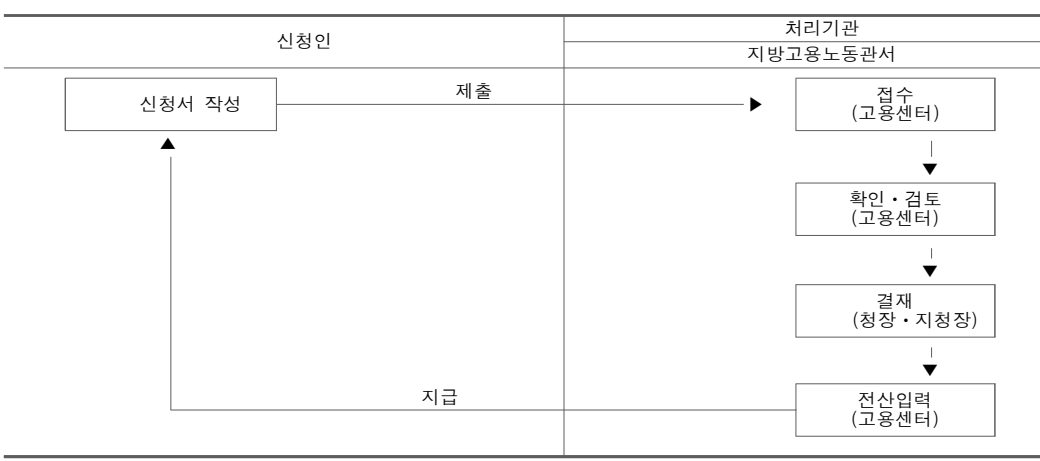
**작성방법**

- ⑤정년은 현재 정년을 적용합니다.
- ⑩상시근로자 수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⑬피크연령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기 시작한 연도의 직전연도의 연령을 적용합니다.
- ⑭본인 적용시점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적용근로자의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시점을 적용합니다.
- ⑮피크임금(⑬, ⑯, ⑰)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 (원단위 버림).  
 ※ 예시) 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12년도 3,000만원일 경우 '15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13 · '14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32,354,100원(3,000만원 × 103.5% × 104.2%)을 기재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임금인상률(%)	4.8	4.8	4.9	1.7	4.8	5.1	4.7	3.5	4.2	4.4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⑯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변경 전과 후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 ⑰근로시간단축 시점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날을 적용합니다.
-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⑳, ㉑, ㉒)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㉑조정 임금은 [피크임금(⑬, ⑯, ⑰)]에서 90%를 곱한 금액을 적고, 1원단위는 버립니다.
- ㉒임금차액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경우 [피크임금(⑬, ⑯, 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 [㉑근로시간 단축 전의 임금]에서 [신청 연도(분기, 월) 임금총액(⑳, ㉑, ㉒) + 감액임금(㉒)]을 뺀 금액을 적용합니다.(1원단위 버림)
- ㉓임금감액 비율은 [㉒임금차액 ÷ 피크임금(⑬, ⑯, ⑰)]으로 계산하며, 10%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신청액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경우 [㉑조정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⑳, ㉑, ㉒) + 감액임금(㉒)]을 뺀 금액,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 [㉒임금차액]의 1/2을 적되, 1,080만원(분기 270만원, 월9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 연 · 분기 · 월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합니다.(1원 단위 버림)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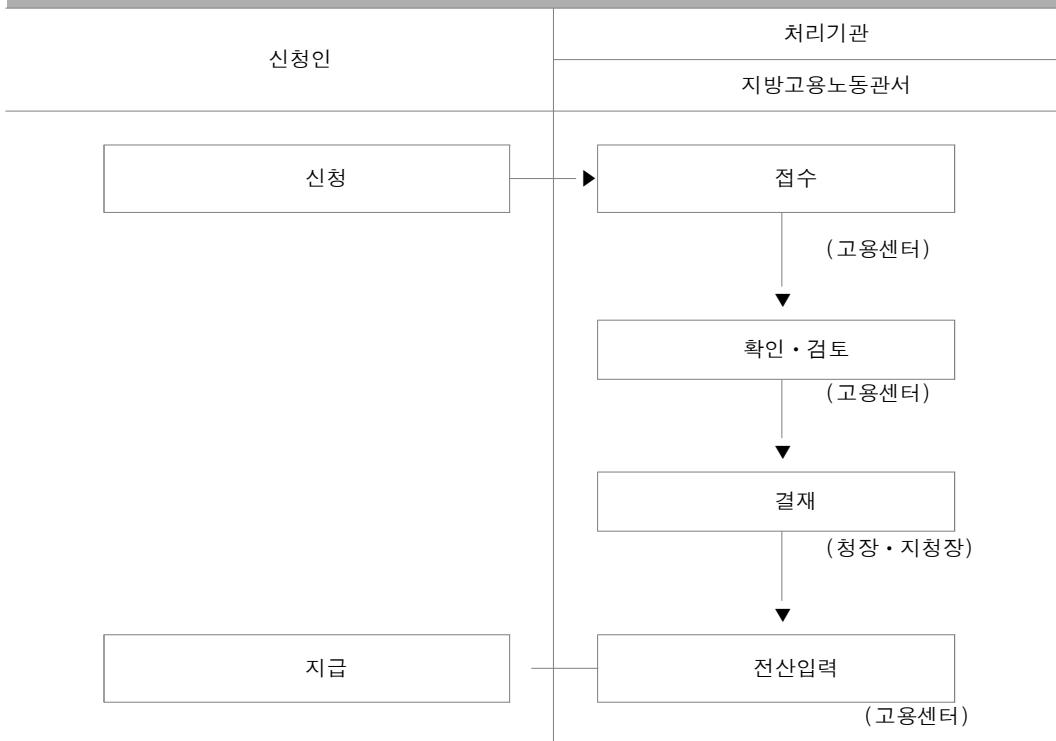


(제2쪽)

작성방법

- ②의 총 개월 수는 ①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기간 내 근로시간 단축 총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개월은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③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②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또는 신규인력채용지원)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②에  $[2(\text{개월}) \times 3(\text{명})] + [1(\text{개월}) \times 2(\text{명})] = 8\text{개월}$ 을 표시  
 - ③에  $\langle \text{해당 고시금액} \rangle / 31\text{일} \times 17\text{일}(1.15. \sim 1.31.) \times 3(\text{명}) + \langle \text{해당 고시금액} \rangle / 31\text{일} \times 27\text{일}(3.5. \sim 3.31.) \times 1(\text{명})$ 로 산정하여 적되, 1원 이하는 버립니다.  
 ※ 해당 연도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 첨부서류를 준비할 때에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별첨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 관련 규정 제·개정 내용

대통령령 제19246호 (2006.1.1. 시행)	대통령령 제20330호 (2007.10.17. 시행, 전부개정)
<p><b>&lt;본칙 규정&gt;</b>  <b>제22조의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b>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 피크 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 피크 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 항에서 같다)부터</p>	<p><b>&lt;본칙 규정&gt;</b>  <b>제28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①</b>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그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p>

<p>6년간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계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계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급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b>&lt;관련 부칙&gt;</b>  <b>제2조 (유효기간)</b> ①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 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p> <p><b>제9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b>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한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p>	<p><b>&lt;관련 부칙&gt;</b>  <b>제3조 (유효기간)</b>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중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8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그 때까지 해당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간까지 지급한다.</p>



<p>대통령령 제21015호 (2008.9.22. 시행)</p>	<p>대통령령 제22603호 (2011.11.1. 시행)</p>
<p><b>&lt;본칙 규정&gt;</b>  <b>제2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b>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그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계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급한다.</p>	<p><b>&lt;본칙 규정&gt;</b>  <b>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lt;개정 2010.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li> <li>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li> <li>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li> <li>4.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li> </ol>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준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lt;개정 2010.7.12, 2010.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20</li> <li>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50</li> <li>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li> </ol> <p>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lt;개정 2010.7.12, 2010.12.31&gt;</p> <p>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고용기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더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을 말한다) 동안 지급한다. &lt;개정 2010.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재고용 또는 고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10년</li> <li>2. 제1항제2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li> </ol>
--	---



	<p>경우: 재고용 또는 고용된날부터 5년.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기간은 통산하여 10년으로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b>&lt;관련 부칙&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107조, 제131조 및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부칙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시행문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p>	<p><b>&lt;부칙&gt;</b>  <b>제19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대통령령 제23513호 (2012.1.13. 시행)</p>	<p>대통령령 제24333호 (2013.1.25. 시행)</p>
<p>&lt;본칙 규정&gt;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lt;개정 2010.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li> <li>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li> <li>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li> <li>4.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li> </ol>	<p>&lt;본칙 규정&gt;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lt;개정 2010.12.31, 2013.1.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li> <li>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li> <li>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li> <li>4.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p>



<p>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lt;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0)</li> <li>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50</li> <li>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5)</li> </ol> <p>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lt;개정 2010.7.12, 2010.12.31&gt;</p> <p>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고용기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더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을 말한다) 동안 지급한다.&lt;개정 2010.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재고용 또는 고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10년</li> </ol>	<p>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lt;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 2013.1.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0)</li> <li>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li> <li>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5)</li> </ol> <p>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lt;개정 2010.7.12, 2010.12.31&gt;</p> <p>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고용기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더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을 말한다) 동안 지급한다.&lt;개정 2010.12.31, 2013.1.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재고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10년</li> <li>2. 제1항제2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되거나,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재고용된 날부터 5년.</li> </ol>
--	--

<p>2. 제1항제2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재고용 또는 고용된 날부터 5년.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기간은 통산하여 10년으로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12.31&gt;</p>	<p>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기간은 통산하여 10년으로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12.31&gt;</p>
<p><b>&lt;부칙&gt;</b>  <b>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b>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감액된 임금분에 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b>&lt;부칙&gt;</b>  <b>제6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 조치)</b>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 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대통령령 제25022호(2014.1.1. 시행)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3. 삭제
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 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 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
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제25022호(2014.1.1. 시행)

## &lt;부칙&gt;

제2조(유효기간)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

제1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첨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85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제28조의2 제2항·제3항, 제28조의3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현행)**

**제1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10,8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7,200,000원,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3,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임금감액 후 1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90,

2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85, 3년 이상 5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0분의 70

가.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2,7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1,8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2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5,8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9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6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416,66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28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임금 인상률(%)	4.8	4.8	4.9	1.7	4.8	5.1	4.7	3.5	4.2	4.4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년간 지급한다.

**제3조(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영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100\text{분의 } 90)] - [(\text{해당 연도 근로소득}) - (\text{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100\text{분의 } 90)] - [(\text{해당 분기 근로소득}) - (\text{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해당 월의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100\text{분의 } 90)] - [(\text{해당 월 근로소득}) - (\text{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임 금 인상률(%)	4.8	4.8	4.9	1.7	4.8	5.1	4.7	3.5	4.2	4.4

**제4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5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시간 기준)**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 ①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으로 한다.

$$[(\text{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times (\text{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text{해당 연도 임금})] \times (1/2)$$

2.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 지급한도액 2,700,000원으로 한다.

$$[(\text{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 \times (\text{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text{해당 분기 임금})] \times (1/2)$$



3. 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월 지급한도액 900,000원으로 한다.

$$[(\text{근로시간 단축 직전 월 임금}) \times (\text{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text{해당 월 임금})] \times (1/2)$$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 및 3호,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③ 제6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영 28조의2 시행일 이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시행일 이후 해당 제도의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9호, 2014.12.31.) 【종전고시】**

**제1조(지급제의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의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68,7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은 10,8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사업장은 7,200,000원,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8,7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임금삭감 후 1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90, 2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85, 3년 이상 5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80(300명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70

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80(300명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2,7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1,8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2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7,175,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5,02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9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6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416,660원)으로 한다.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임금 인상률(%)	4.7	4.8	4.8	4.9	1.7	4.8	5.1	4.7	3.5	4.2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만원에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년간 지급한다.

**제3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4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단위 또는 월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81호, 2013.12.31) 【중전고시】

**제1조(지급제의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의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68,7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은 8,4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사업장은 7,200,000원,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8,7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임금삭감 후 1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90, 2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85, 3년 이상 5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80(300명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70

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80(300명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2,1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1,8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2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7,175,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5,02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text{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text{해당 분기 근로소득}) - (\text{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7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6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416,660원)으로 한다.

$[(\text{해당 월의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text{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text{해당 월 근로소득}) - (\text{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임금 인상률(%)	4.7	4.8	4.8	4.9	1.7	4.8	5.1	4.7	3.5

**제3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4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단위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8호, 2013.1.25.) 【중전고시】**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3,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57,6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0,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text{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text{해당 연도 근로소득}) - (\text{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90)
  -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70
  - 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85)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7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4,4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2,6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text{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text{해당 분기 근로소득}) - (\text{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임금인상률(%)	4.7	4.8	4.8	4.9	1.7	4.8	5.1	4.7

**제3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4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6호(2011. 2. 28.)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2012년 이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③ 2012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7호(2012. 1. 20.)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7호, 2012.1.20.) 【중전고시】**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3,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57,6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36,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text{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text{해당 연도 근로소득}) - (\text{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90)
  -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50
  - 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85)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7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4,4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9,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text{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text{해당 분기 근로소득}) - (\text{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임금인상률(%)	4.7	4.8	4.8	4.9	1.7	4.8	5.1

**제3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4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6호(2011. 2. 28.)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2012년 이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6호, 2011.2.28.) 【중전고시】**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68,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3,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8,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43,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text{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text{해당 연도 근로소득}) - (\text{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50
  - 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70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7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7,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0,7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times (\text{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times (\text{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text{해당 분기 근로소득}) - (\text{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인상률(%)	4.7	4.8	4.8	4.9	1.7	4.8

**제3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4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7호(2010.8.3.)에 따라 지급한다.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 2010.8.3) 【중전고시】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해당연도 임금(이하 “해당연도 임금”이라 한다)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해당연도 분기임금(이하 “해당연도 분기임금”이라 한다)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다.

### 3.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제3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서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4조(초과지급분의 상계)**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초과 지급분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급분 만큼 상계하고 지급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적용한다.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5호, 2010.3.10) 【중전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분기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서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는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4.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다지급분 만큼 상계하고 지급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9-11호, 200941) 【중전고시】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관련)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해당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분기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함.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3.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11제6호 관련) :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4. 제2호 가목에 의한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과다 지급분 만큼 상계하고 지급함.

####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별첨 4>

연도별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주요내용

유형	'10년 이전 시행 사업장		'11년 시행 사업장		
정년 연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6세 이상 고용보장</li> <li>임금이 피크대비 10% 이상 감액</li> </ul>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li> <li>56세 이상 고용보장</li> <li>임금이 피크대비 20% 이상 감액</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임금차액의 1/2 지원</li> <li>최대 6년(54세부터 지원)</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8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최대 10년(50세 이후부터 지원)</li> </ul>	
근로 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지원요건 없이 정년연장형과 동일</li> </ul>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 시점 대비 50% 이상 단축</li> <li>임금이 피크대비 50% 이상 감액</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5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은 최대 10년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은 최대 5년</li> </ul>	
재고용	유형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지원요건 없이 정년연장형과 동일</li> </ul>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li> <li>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8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최대 5년간 지원</li> </ul>
	유형 II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li> <li>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7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최대 5년간 지원</li> </ul>
정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지원요건 없이 정년연장형과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차별 소지가 있어 2011년부터 폐지</li> </ul>		

\* 재고용형 I: 정년 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 재고용형 II: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 정년보장형은 '10.12.31. 이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에만 지원

유형		'12년 시행 사업장		'13년 시행 사업장	
정년 연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li> <li>56세 이상 고용보장</li> <li>피크임금 대비 20%(우선지원 대상 기업 10%) 이상 감액</li> </ul>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li> <li>56세 이상 고용보장</li> <li>피크임금 대비 20%(우선지원 대상 기업 10%) 이상 감액</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 9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최대 10년(50세 이후부터 지원)</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 9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최대 10년(50세 이후부터 지원)</li> </ul>	
근로 시간 단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간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단축</li> <li>임금이 피크대비 50% 이상 감액</li> </ul>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간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li> <li>임금이 피크대비 30% 이상 감액</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5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0년,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5년</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7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0년,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은 최대 5년</li> </ul>	
재고 용	유형 I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li> <li>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li> </ul>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li> <li>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 9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최대 5년간 지원</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 9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최대 5년간 지원</li> </ul>
	유형 II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li> <li>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li> </ul>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li> <li>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70%(우선지원 대상 기업 85%)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최대 5년간 지원</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크 대비 70%(우선지원 대상 기업 85%) 이하 감액분 지원</li> <li>최대 5년간 지원</li> </ul>
정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차별 소지가 있어 2011년부터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차별 소지가 있어 2011년부터 폐지</li> </ul>		



유형	'14년 시행 사업장	
정년연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li> <li>• 56세 이상 정년연장</li> <li>•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은 연차 구분없이 10%) 이상 임금 감액</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크 대비 1년차 90%, 2년차 85%, 3~5년차 80% (300인 미만은 9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 최대 5년간 지원</li> </ul>
근로시간 단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간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li> <li>•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임금 감액</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크 대비 7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 최대 5년간 지원</li> </ul>
재고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li> <li>• 피크임금 대비 20%(300인 미만은 10%) 이상 임금 감액</li> <li>• 1년 이상 재고용</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크 대비 80%(300인 미만은 90%) 이하 감액분 지원</li> <li>• 최대 5년간 지원</li> </ul>
정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차별 소지가 있어 2011년부터 폐지</li> </ul>	